

#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의결주문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 「철도건설법」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이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전원개발촉진법」,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그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등기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 변경함(안 제1조, 제2조제1항)
- 「전원개발촉진법」, 「하수도법」에 신설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아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4.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붙임과 같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및 「수도법」 제60조의3제3항”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수도법」 제60조의3제3항,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4 제3항 및 「하수도법」 제10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 및 「수도법」 제3조제21호의 수도사업자(이하 “수도사업자”라 한다)”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 「수도법」 제3조제21호의 수도사업자(이하 “수도사업자”라 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의 전원개발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 및 「하수도법」

제10조의3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이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및 수도사업자”를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수도사업자, 전원개발사업자 및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하수도법」 제10조의3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4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6일 이후 전원개발사업자가 구분지상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구분지상권에 관한 수용·사용 재결을 완료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2조제3항, 「도로법」 제28조제5항,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제3항, 「철도건설법」 제12조의3제3항,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및 「수도법」 제60조의3제3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br/>-----<br/>-----<br/>-----,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수도법」 제60조의3제3항,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4제3항 및 「하수도법」 제10조의3제3항-----<br/>-----.</p> |
| <p>제2조(수용·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① 「도시철도법」 제2조제7호의 도시철도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5호의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이하</p> | <p>제2조(수용·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① -----<br/>-----<br/>-----<br/>-----<br/>-----<br/>-----<br/>-----<br/>-----<br/>-----<br/>-----</p>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라 한다), 「철도건설법」 제8조의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 및 「수도법」 제3조제21호의 수도사업자(이하 “수도사업자”라 한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 권리수용이나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조(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① 도시철도건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 「수도법」 제3조제21호의 수도사업자(이하 “수도사업자”라 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의 전원개발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 및 「하수도법」 제10조의3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이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자”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①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
| 연락처                | (02) 3480-1394 |